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상습체불사업주 신용제재 근거 마련 등
임금체불 예방 조치 마련 〉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649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1
IV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임금채불 관련 현황	3
2. 현행법상 임금등 채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신용제재 및 입찰 시 감점 등 제재조치	5
3.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 채불 시 가산된 지연이자 적용(안 제37조)	11
4. 명단 공개의 요건이 되는 채불임금등의 범위 명확화 및 채불 총액 기준 하향 조정(안 제43조의2제1항)	16
5. 상습채불사업주의 정의 및 보조·지원제한을 위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정보제공 근거 마련(안 제43조의4 및 제43조의5) ..	21

6. 상습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신용 제재, 보조 제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제공 등 요청 근거 마련(안 제43조의6) 26

I. 제안경위

2024년 9월 4일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임금체불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이었고, 임금체불을 신고한 노동자는 27만 5,432명이었음. 올해에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약 1조 436억 원이 발생했기 때문임.

임금체불을 예방하여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음.

이에 임금체불을 예방해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에 정부지원 제한 등 각종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아가 보다 효율적인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서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요건도 낮추는 등 임금체불 예방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함(안 제37조).
- 나.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 기준을 체불총액 3천만 원 이상에서 2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함(안 제43조의2).
- 다. 상습체불사업주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 라.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5 신설).
- 마.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 전산망 이용 및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6 신설).

IV.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임금체불 관련 현황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제43조), 이를 위반하여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제109조), 미지급 임금(사망·퇴직근로자에 한정)에 대한 법정지연이자 지급(제37조),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제43조의2) 및 신용제재(제43조의3) 등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기준 임금체불 신고건수는 약 18만건, 피해 근로자수는 약 27만명, 임금체불 신고 금액은 약 1조 7,845억원에 이르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표] 연도별 임금체불 관련 현황

(단위: 건, 명, 백만원)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구분		접수건수	근로자수	체불금액	접수건수	근로자수	체불금액	접수건수	근로자수	체불금액
신고		160,304	247,005	1,350,452	155,424	237,501	1,347,209	185,211	275,432	1,784,530
처리	계	157,864	242,541	1,314,096	153,342	233,458	1,310,104	182,487	270,074	1,726,666
	지도 해결	111,001	157,782	740,251	114,318	161,193	805,980	141,275	196,866	1,138,470
	사법 처리	46,863	84,759	573,846	39,024	72,265	504,124	41,212	73,208	588,196

*자료: 고용노동부

현행법상 임금체불 제재는 형사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체불액보다 적은 소액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 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고, 신용제재·명단공개 제도를 병행중이나 엄격한 요건 등으로 대상이 적어 그 효과가 미흡한 상황인바,¹⁾ 정부는 2023. 5. 『상습체불 근절 대책』을 통해 상습체불 사업주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고, 정부지원금 수급제한, 공공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²⁾

개정안은 임금체불 발생 현황을 고려하고, 정부가 발표한 대책 등을 반영하여 ①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대상을 재직근로자로 확대하고(안 제37조), ②체불사업주 명단공개의 기준이 되는 체불총액을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며(안 제43조의2), ③상습체불 사업주³⁾에 대한 정부지원금 수급 제한 및 공공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를 신설하고(안 제43조의4 및 제43조의5), ④명단공개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를 마련하는(안 제43조의6) 등의 내용으로,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 생계보호에 기여함에 의의가 있다고 볼 것임.

1) (요건) 3년간 2회 이상 유죄확정+1년간 체불총액 3천만원(명단공개), 2천만원(신용제재) 이상
2023년 명단공개 대상자 172명, 신용제재 대상자 308명

2) 고용노동부, “상습체불사업주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한다”, 2023년 5월 3일자 보도자료

3) 1년간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하고 그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함.

2. 현행법상 임금등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신용제재 및 입찰 시 감점 등 제재조치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서 규정하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①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②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⁴⁾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신용제재는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7년 동안⁵⁾ 신용관리 대상으로 등재되어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되는 조치를 말함.

체불사업주의 신용제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에서 규정하는데, 종합정보신용집중기관이 ①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

4)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명단공개의 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있음.

5)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상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등록이 해제됨.

서 ②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인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2013년~2024년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인원>

(단위: 명)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1차	계
명단공개	290	183	344	116	403	365	385	362	150	265	297	194	3,354
신용제재	505	290	558	191	675	607	673	647	292	438	530	307	5,713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10조⁶⁾에서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계약의 성질,

-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과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 결정 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7)에서는 입찰자 중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세부심사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서 정하고 있음.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에 따르면 경쟁입찰에 있어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⁸⁾ 공사수행능력의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삭제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입찰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용역입찰의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을 말하며, 제40조제2항 단서 및 이하에서 같다)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공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용역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같은 영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15억원 이상인 용역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25억원 이상인 용역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하도급관리계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세부 심사방법에 있어 임금채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별표2)>

7. 건설인력 고용 심사

다.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채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한다.

- 1) 평가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 2) 명단공개 사업주의 범위는 입찰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대상기간동안 입찰자의 이름으로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된 공사현장에 참여한 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 3)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을, 하수급인의 명단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다.
- 4) 근로기준법 준수 등급 및 등급별 점수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세부 심사기준으로 정한다.

8) 「공사업 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조(심사기준) 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심사(이하 "종합심사낙찰제"라 한다)는 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발주기관이 물량·시공계획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고난이도 공사(이하 이 예규에서 "고난이도 공사"라고 한다): 제10조 내지 제13조, [별표1-2], [별표2] 내지 [별표4]
 2.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이면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이하 이 예규에서 "일반공사"라고 한다): 제10조 내지 제13조, [별표1-1], [별표2] 내지 [별표4]
 3.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면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이하 이 예규에서 "간이형 공사"라고 한다): 제10조 내지 제13조, [별표1-3], [별표2] 내지 [별표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의 공사는 문화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절차 및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산정 점수에서 감점이 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음.

참고로, 2024. 9.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임금체불 억제와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마련되었음.

<2024. 9.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함
- 상습체불사업주⁹⁾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을 위하여 해당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국가등이 요구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상습체불사업주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에게 명단공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함

-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1년간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인 경우 등에는 법원에 근로자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조건의 보호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명단공표 체불사업주가 명단공표 기간 중 임금체불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9) 1년간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하고 그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함.

3.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시 가산된 지연이자 적용(안 제37조)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대상을 현행 퇴직근로자에서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임(안 제37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제36조, 제43조에----- ----- ----- -----제2항에 따른 날까지----- ----- ----- ----- ----- -----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생략)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

② 제1항에 따른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3조(임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나. 검토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¹⁰⁾ 이를 그 지급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¹¹⁾ 대통령령에서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²⁾

10)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1)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한편, ‘재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경우, 그 임금채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고¹³⁾ 임금채권 확보를 위한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변제일까지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으므로,¹⁴⁾ 근로자의 사망·퇴직 등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등의 관련 채무를 청산할 때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연 20%)과 재직 근로자의 임금채불 시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연 6%, 최대 12%)이 상이함.

개정안은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하여 퇴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재직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 내 규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조기 청산을 유도하고 임금채불로 피해를 입은 재직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의의가 있음.

13)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1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의 범위>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사망·퇴직 근로자	<u>연 100분의 40 이내</u> 의 범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에 따른 지연이자	<u>연 100분의 40 이내</u> 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율에 따른 지연이자
재직근로자	연 6%(상사이율) *소송제기 시 12%까지 가능	

참고로, 2024. 9.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재직자의 임금체불에 대
하여도 법정 지연이자가 적용될 예정임.

4. 명단 공개의 요건이 되는 체불임금등의 범위 명확화 및 체불총액 기준 하향 조정(안 제43조의2제1항)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의 기준이 되는 임금등 체불총액에 포함되는 사항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등¹⁵⁾을 명시하고, 명단공개 요건이 되는 체불총액의 기준을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43조의2제1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u>수당</u> ,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	① ----- ----- -----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 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있음.

명단공개 기준이 되는 ‘임금등’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퇴직·사망에 따른 퇴직금 등 정산금(제36조), 임금(제43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의 초과근로수당(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연장·야간·휴일 초과근로수당(제56조)이 포함되어 있고, 퇴직연금 부담금의 미납분¹⁶⁾이나 사용자에게 지급책임이 있는 퇴직연금¹⁷⁾의 미지급분도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나, ‘임금등’의 구체적인 사례로 명시되지 않아 그 포함여부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웠음.

개정안은 명단공개 기준이 되는 ‘임금등’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퇴직급여등에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미납입 부담금과 그 지연이자¹⁸⁾가 포함됨.

16)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서는 사용자의 지급분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고정되어 있어 기업의 지급의무 부담분이 확정되어 있음.

17)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말함.

개정안은 퇴직연금에 관한 사용자의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하여도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임.

한편, 개정안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기준이 되는 체불총액의 수준을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명단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명단공개는 체불사업주의 성명, 사업체명, 체불액 등을 공표함으로써 공표대상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조치에 해당하는바,¹⁸⁾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임금체불 억제 효과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임.

참고로, 2024. 9.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체불사업주 명단공표의 기준이 되는 임금등 체불총액에 포함되는 사항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등이 명시되었음.

18) 헌법재판소 2022. 3. 31. 2019헌바520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어린이집 대표자 등의 정보가 공표되면 공표대상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한다.…심판대상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어린이집 대표자 또는 원장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의 명칭, 종류, 주소,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 등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표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의 기준이 되는 체불총액의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①개인정보 공개는 사업주의 정상적인 경제·사회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②2024. 9.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 및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출국금지, 입찰제한 등) 그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진 이후 개선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5. 상습체불사업주의 정의 및 보조·지원제한을 위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정보제공 근거 마련(안 제43조의4 및 제43조의5)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①근로자에게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퇴직급여등은 제외)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하거나 ②5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3조의4 신설),

이들에 대하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조·지원 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을 하거나,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또는 낙찰자 심사·결정 시 감점 등 불이익조치를 위해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5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① 상습체불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1.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은 제외한다)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한 사업주 2.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② 제1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임금등 체불횟수의 산정 및 제2항에 따른 소명 기회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3조의5(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u>요구할 때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u> 1. 「<u>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u>」, 「<u>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u>」 또는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조·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2. 「<u>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u>」 또는 「<u>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u>」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심사·결정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 ② <u>상습채불사업주의 임금등 채불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③ <u>제1항에 따른 임금등 채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은 제43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u>
--	---

나. 검토내용

현재 채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외의 제재조치에는 명단공표, 신용제재, 공공영역에서의 계약상 불이익 부과가 있는데, 개정안은 신용제재의 대상에 ‘상습채불사업주’를 추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각종 보조·지원 사업이나 국가계약법, 지방

계약법 등 공공영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관련하여 체불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①고용노동부장관의 정보제공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불정보를 활용한 개별적인 제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는 점, ②임금체불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상습적인 체불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 ③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될 자에게 사전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 ④체불사업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임.

<개정안에 따른 체불자료 제공 목적 및 제공 기준>

구 분	내 용
자료요청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요청목적	① 각종 보조, 지원 사업의 참여배제, 수급제한 ②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낙찰자 심사·결정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
제공기준	안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 <상습체불사업주 요건> ○ 다음 중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자 - 자료제공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 - 자료제공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1년간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자

2024. 9.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¹⁹⁾ 이들에 대하여 신용제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배제 및 수급 제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상 불이익 조치 등의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개정안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체불총액의 기준을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상습체불사업주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19) 체불자료 제공일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그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6. 상습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신용 제재, 보조 제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제공 등 요청 근거 마련(안 제43조의6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명단공개, 신용 제재 등) 업무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국세청 등에 관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안 제43조의6).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3조의6(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5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1.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사업주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2.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법인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3. 국세청장에게 체불근로자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4.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사업주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나. 검토내용

개정안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명단공개, 신용제재 등)를 위해 법원행정처, 국세청 및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사업주에 대한 소득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간 정보가 원활히 공유될 수 있도록 함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볼 것임.

2024. 9.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신용제재,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개정안은 ①자료 요청 목적을 확대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로 규정하였다는 점, ②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것임.

문 의 처
02)6788-5540